**2016년 내각부령 제6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규칙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호 및 제6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31조 제1항 및 제4항과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정의)

**제1조** 이 부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령(2009년 정령 제208호. 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공청회의 공고)

**제2조** 소비자청 장관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는 그 기일의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기일 및 장소, 안건의 내용과 의견신청 요령을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술인의 선정)

**제3조** 공청회에서 의견을 언급할 수 있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을 제출한 자들 중에서 소비자청 장관이 선정하여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2 소비자청 장관은 전항의 선정을 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자 및 반대자가 있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를 하여야 한다.

(공술 의뢰)

**제4조** 소비자청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식경험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에게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청회 실시)

**제5조** 공청회는 소비자청 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청의 직원에게 주재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를 주재한 직원은 다음 조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 기록)

**제6조** 소비자청 장관은 공청회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일. 안건의 내용

이. 공청회의 기일 및 장소

삼.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법인 그 외 단체에서는 그 명칭,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과 그 의견의 요지

사. 기타 필요한 사항

(법 제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절차)

**제7조** 소비자청 장관은 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일.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표시

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및 장소

2 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전항의 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이 경과되는 날까지 기간으로 한다. 단, 사업자가 해당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8조** 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표시가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시사할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 게재하는 방법 그 외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일반소비자에게 주지하는 조치로 한다.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 방법)

**제9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식 제1에 의한 보고서(해당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따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을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 직접 지참하는 방법

이. 서류 우편,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호. 제3항에서 “서신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일반서신편사업자 또는 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특정 서신편사업자에 의한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신편의 역무로서 해당 일반서신편사업자 혹은 해당 특정서신편사업자에서 인수 및 배달 기록을 하는 것 또는 이들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보내는 방법

삼. 전자적 기록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151호)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이하, “전자적 방법”이라고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제1항 제2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동항에 규정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서, 해당 보고서를 일본우편주식회사의 영업소(간이우편국법(1949년 법률 제213호)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우편국을 포함하며, 우편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제출한 일시를 우편물의 수령일에 의해 증명했을 때는 그 일시에, 그 우편물 또는 서신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신편물(이하, 이 항에서 “서신편물”이라고 한다)의 통신일자에 의해 표시된 일시가 명료할 때는 그 일시에, 그 우편물 또는 서신편물의 통신일자인에 의해 표시된 일시 중 날짜만 명료하고 시간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표시된 날의 오후 12시에, 그 표시가 없을 때 또는 그 표시가 명료하지 않을 때는 그 우편물 또는 서신편물에 대하여 통상 요하는 송부일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 그 날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날의 오후 12시에, 해당 보고서가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해 동항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이 전송된 경우에는 소비자청의 사용에 관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이 되었을 때, 동항에 규정하는 보고서가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인정신청방법)

**제10조**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다음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신청자”라고 한다)는 양식 제2에 의한 신청서(해당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일.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자료

이.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삼. 기타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을 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

(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제11조** 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일.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신청 전에 이미 실시한 환불조치(다음 항에서 “인정신청 전의 환불조치”라고 한다)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제공을 받은 날(신청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구매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날)

삼. 제1호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이 있었던 것.

사. 제1호에 규정하는 자의 거래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신청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 및 해당 구매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액

오.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금액을 교부한 날

육.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한 금액 및 계산방법

칠.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금액의 교부 방법

팔.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

2 전항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조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인정신청전의 환불조치를 실시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제12조**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다음 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신청 후 인정 전 보고자”라고 한다)는 양식 제3에 의한 보고서(해당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으로 한다.

일.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신청 후 이에 대한 처분을 받기까지 사이에 실시한 환불조치(제8호 및 다음 항에서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라고 한다)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이.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의 제공을 받은 날(신청 후 인정 전 보고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호에 규정하는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구매 또는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

삼. 제1호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이 있었던 것.

사. 제1호에 규정하는 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신청 후 인정 전 보고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 및 해당 구매액에 100분의 3을 곱해 얻은 금액

오.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금액을 교부한 날

육.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부한 금액 및 계산 방법

칠. 제1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금액의 교부 방법

팔.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 및 그 조달 방법

구. 기타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

3 제1항의 보고서에는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해당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3조**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제10조 제1항의 신청서를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4월이 경과되는 날(법 제10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실시기간 말일부터 1월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정의 신청 방법)

**제14조** 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변경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사업자는 양식 제4에 의한 신청서(해당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기록을 포함한다)를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통지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 외 동조 제6항의 인정을 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한 자료를 첨부한다.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실시결과의 보고 방법)

**제15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양식 제5에 의한 보고서(해당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를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일.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가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정이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다음 호와 다음 조에서 같다)에 적합하여 실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이.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실시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삼.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액수의 계산)

**제16조**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액수는 다음 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액수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일. 인정사업자가 실시한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환불조치(해당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 혹은 기록되어 있을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기록 또는 보고에 이와 같은 환불조치를 포함한다. 다음 호 및 다음 항에서 같다)에 있어서 교부된 금액이 해당 환불조치 대상이 된 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 이하, “특정 구매액”이라고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 해당 특정 구매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인정사업자가 실시한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환불조치에서 교부된 금액이 특정 구매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일 때 - 해당 환불조치에서 교부된 금액

2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둘 이상 있을 때로, 그 중 둘 이상의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환불조치(이하, 이 항에서 “둘 이상 자회사 등 실시환불조치”라고 한다)의 결과를 보고하고, 소비자청 장관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둘 이상 자회사 등 실시 환불조치가 해당 둘 이상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에 관한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각각 적합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했을 때는 해당 둘 이상의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에 대해서 동항에 규정하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일. 해당 둘 이상 자회사 등 실시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금액

가. 해당 둘 이상 자회사 등 실시 환불조치(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환불조치는 제외한다)에서 교부된 금액의 총액에 동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환불조치에서 교부된 금액(해당 환불조치가 없는 경우에서는 영)을 추가한 금액(“나”에서 “특정 교부액”이라고 한다)이 특정 구매액에 상 해당 금액을 초과할 때 - 해당 특정 구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특정 교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전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열거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가” 또는 “나”에 정하는 금액

가. 해당 둘 이상 자회사 등 실시 환불조치에서 교부된 금액이 특정 구매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초과할 때 - 해당 특정 구매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해당 둘 이상의 자회사 등 실시 환불조치에서 교부된 금액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둘 이상 있을 때 과징금 감액 등의 특례)

**제17조** 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 둘 이상 있을 때, 그 중 하나 이상의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에 대해서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으로부터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액을 감액할 때는 해당 하나 이상의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다음 항에서 “특례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과징금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액수를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액 후의 금액이 영 미만일 때는 해당 금액은 영으로 한다.

2 소비자청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특례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에 관한 과징금이 1 만엔 미만이 되었을 경우,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에 대해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비자청 장관은 신속히 해당 특례 특정 사업승계 자회사 등에 문서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 독촉)

**제18조** 법 제18조 제1항의 독촉장은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과징금 및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의 충당 순서)

**제19조**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체금을 아울러 징수할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이 그 연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징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납부한 금액은 우선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징금에 충당된 것으로 한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명령 방식 등)

**제20조**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명령은 문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명령서 등본은 과징금 납부 명령의 집행을 받는 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제21조** 법 제29조 제2항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는 양식 제6에 따른다.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 신청)

**제22조**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양식 제7에 따른 협정 또는 규약 인정 신청서 정본 및 부본 각 1통과 해당 협정 또는 규약의 사본 2통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청장관 중 하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것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항에 규정하는 것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정 또는 규약에 관한 처분의 고시)

**제23조**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 고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해야 한다.

일. 인정이 있었던 내용

이. 해당 협정 또는 규약에 관한 사업의 종류

삼. 해당 협정 또는 규약의 내용

사. 인증 이유

2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 취소 고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해야 한다.

일. 취소가 있었던 내용

이. 해당 협정 또는 규약에 관한 사업의 종류

삼. 취소 이유

(통지를 받아야 하는 자의 신고)

**제24조**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을 받은 것은 해당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청 장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

**제25조** 이 부령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일본어 로 작성해야 한다.

**부칙**

(시행기일)

1 이 부령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8년 법률 제118호)의 시행일(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폐지)

2. 다음에 열거하는 부령은 폐지한다.

일.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한 내각부령(1962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2호)

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신청 등에 관한 내각부령(1962년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4호)

삼.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절차에 관한 내각부령(2009년 내각부령 제51호)

사.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이 휴대하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양식을 정하는 내각부령

(2009년 내각부령 제53호)

(경과조치)

3 이 부령의 시행 전에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 또는 규약의 인정 신청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협정 또는 규약인정 신청서 정본 및 부본 각 1통과 해당 협정 또는 규약의 사본 2통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9년 6월 28일 내각부령 제17호) 발췌**

(시행기일)

**제1조** 이 부령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년 12월 28일 내각부령 제87호)**

이 부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3월 14일 내각부령 제16호)**

이 부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제9조 관련)

양식 제1(제9조 관련)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보고서

년 월 일

소비자청 장관 귀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부서명

주소 또는 소재지(우편번호)

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전화 번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래

1 보고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개요

|  |  |
| --- | --- |
| (1)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 |  |
| (2)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 | 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 내용 |
| 나.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실시 |
| (3)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 그 외 참고가 되는 사항

3 첨부 자료

표와 같음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의 표지 | 자료내용 설명 | 비고 |
|  |  |  |  |
|  |  |  |  |
|  |  |  |  |

이상

(기재 요령)

1 보고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개요

(1)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용역을 알 수 있도록 1(1)의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

가.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의 내용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내용의 기재에 있어서는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의 내용이 밝혀지도록 1 (2) “가”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 표시가 다수인 경우, 각각 기재한다.

나.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

상기 “가”의 표시에 대응하는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실제내용 또는 거래조건, 또는 동종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역무를 공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혹은 역무 내용 혹은 거래조건의 실제를 1 (2) “나”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한 기간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시작한 날 및 그만둔 날을 1 (3)의 란에 기재한다.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시작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실시한 것이 확실한 날로서, 가장 오래된 날을 기재하며, “늦어도”라고 부기한다.

실제일로서, 가장 오래된 날을 기재하고, “늦어도”라고 부기한다.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가 다수인 경우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를 시작한 날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오래된 날을 기재한다.

2 그 외 참고가 될만한 사항

예를 들면,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특성 등), 매출액, 상류 등 참고될만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첨부자료

(1)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에 관한 자료나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에 관한 자료 등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를 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문 또는 관련 부분의 초역을 첨부한다.

예를 들면, 해당 표시에 관한 자료로는, ① 해당 표시가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한 광고 그 외표시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 용기 또는 포장 등, ②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표시내용으로 하는 전단지, 팜플렛, 포스터, 신문지, 잡지 등의 사본(TV 방송에 의한 표시일 때는 영상을 녹화하여 음성을 녹음한 것, 웹사이트에서의 표시일 때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인쇄한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 상기 1 및 2에 기재한 사항 중 어떤 사항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상기 1 (3)에 기재한 사항의 뒷받침이 되는 자료에는 “1-(3)”이라는 번호를 “비고”에 기재한다.

(기타 일반 주의사항)

1 대리인에 의해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대리인에 의한 보고라는 내용 및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아울러 위임장을 첨부한다.

2 기재 사항에 대해 전부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별지에 기재한다.

3 본 보고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4 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오 송신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용지의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양식 제2(제10조 관련)**

양식 제2(제10조 관련)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인정신청서

년 월 일

소비자청장 귀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부서명

주소 또는 소재지(우편번호) 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 계획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하므로 신청합니다.

아래

1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2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사항

3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표1과 같음

(표1)

|  |  |  |  |  |
| --- | --- | --- | --- | --- |
|  | 자기자금 | 자금차입 | 기타 | 합계 |
| 금액 |  |  |  |  |
| 조달처 명칭 | - |  |  | - |
| 비고 |  |  |  | - |

(단위: 엔)

4 기타

5 첨부자료

표2와 같음

(표2)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자료내용 설명 | 비고 |
|  |  |  |  |
|  |  |  |  |
|  |  |  |  |

이상

(별지)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주)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인정신청 전에 이미 실시한 환불조치(본 신청서에서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라고 한다)가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1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표1과 같음

(표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성명/명칭 | 거래일 | 신고 | 구입액 | 최저액 | 교부일 | 교부금액 | 계산방법 | 교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첨부자료

표2와 같음

(표2)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 및 실시기간

(1)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그 때, 아래 “가”에서 “라”까지 사항이 명확해지도록 유의한다.

가.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의 “일반소비자”

“일반소비자”(“과징금 대상기간에서 해당 상품 또는 역무 거래를 실시한 일반소비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특정된 것”)는 “과징금 대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역무” 및 “과징금 대상기간”을 명확히 하면서 기재한다.

더불어, 본 신청서의 제출시점에 상정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령(2009년 정령 제218호.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조에 규정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4 기타”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후기4(1) 참조).

나. “가”의 “일반소비자”로부터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금액을 교부할 것

다. 교부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교부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이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신청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구매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 이상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라. 금액 교부 방법

(2) 실시기간

본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한다.

2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사항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의 방법, 주지를 예정하고 있는 시기(이미 주지된 경우는 해당 주지 시기), 주지 기간 및 주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표1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을 기재한다.

그 때, “자기 자금”에는 스스로 보유하는 자금으로부터 출연하는 금액을, “자금 차입”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에 의한 조달액을, “기타”에는 “자기 자금” 및 “자금 차입” 이외의 조달 방법에 의한 출자 등의 조달액을, 조달처의 명칭 및 금액 내역을 나타내면서 기재한다. 이 신청서의 제출일 후에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액수를 조달할 예정인 경우, “비고”에 조달 예정 시기를 기재한다.

4 기타

(1) 참고 사항으로서, 본 신청서의 제출 시점에 상정한 영 제3조에 규정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예를 들면, 영 제3조에 규정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상정한 경우에는 그들을 기재한다). 특정 자료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자료의 조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 자료 B 및 자료 C 중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조합이 자료 A 및 자료 B, 자료 A 및 자료 C라고 생각하면, 해당 조합을 명시한다).

(2) 또한, 참고 사항으로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의뢰하는 신청 방법을 기재한다. 해당 신청 방법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기재한다.

(3) 인정신청 전의 환불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와 같이 인정신청 전의 환불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인정신청 전의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에 기재한다. 별지의 기재 요령은 6과 같다.

5 첨부자료

(1) ①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는 자료, ②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및 ③ 그 외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인정을 하기 위해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본 신청서에 첨부한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문 또는 관련부분의 초역을 첨부한다.

(2) 해당 자료를 첨부함에서는 표2에 해당 자료의 내용을 기재한다.

그 때, 첨부하는 자료가 (1) 에서 까지 중 어느 것에 관한 자료인지를 있는지를 “비고”에 기재한다.

(3) 별지(인정신청 전 환불조치가 있는 경우)의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6(2)와 같다.

6 별지(인정신청 전 환불조치가 있는 경우)

(1)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별지의 표1에 인정신청 전의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 때, 아래 “가”에서 “차”까지 유의한다.

가.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마다 기재한다.

나. “이름 · 명칭“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

다. “거래일”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을 받은 날(신청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구매 또는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재한다. 해당 거래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기간 내로서 해당 거래를 했음이 확실한 시기를 기재한다.

라. “신청”에는 “이름・명칭“에 기재된 자로부터 금액교부 신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있음”으로 기재한다.

마. “구매액”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신청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를 기재한다.

바. “최저액”에는 해당 구매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소수점 이하 반올림)를 기재한다.

사. “교부일”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금액을 교부한 날을 기재한다.

아. “교부금액”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교부한 금액을 기재한다.

자. “계산방법”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교부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기재한다.

차. “교부방법”에는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 이 된 자에 대한 금액의 교부방법을 기재한다.

(2) 첨부자료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본 신청서에 첨부한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문 또는 관계부분의 초역을 첨부한다.

해당 인정신청 전의 환불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때는 별지의 표2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그 때, 아래 “가”에서 “다”까지 유의한다.

가. “번호“에는 별지의 표1에 기재한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 대응하는 번호를 기재한다.

해당 인정신청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대해 여러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자료마다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 행에 기재한다. 단,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별지의 표 1에 기재한 사항 중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가지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행에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 및 자료 B를 조합함으로써 “거래일“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료 A 및 자료 B를 한 줄에 기재한다.

나. “첨부자료의 표지”에는 별지의 표1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해당 인정신청 전 반환조치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대해 여러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한 가지번호마다 한 첨부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단,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별지의 표 1에 기재한 사항 중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지번호에 대응하는 줄에 해당 여러 자료를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 및 자료 B를 조합함으로써 “거래일”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해당 자료 A 및 자료 B는 한 줄에 기재한다).

다. “증명사실”에는 별지의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할 것인지가 명확해지도록 그 항목을 기재한다.

(기타 일반 주의사항)

1 대리인에 의해 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대리인에 의한 보고라는 내용 및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아울러 위임장을 첨부한다.

2 기재 사항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히 별지에 기재한다.

3 본 신청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4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된 변명서의 제출기한까지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한다.

5 용지의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양식 제3(제12조 관련)**

양식 제3(제12조 관련)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의 보고서

 년 월 일

소비자청 장관 귀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부서명

주소 또는 소재지(우편번호)

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년 월 일에서의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인정 신청 후 이에 대한 처분을 받기까지 사이에 실시한 환불조치(본 보고서에서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아래

1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표1과 같음

(표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성명/명칭 | 거래일 | 신고 | 구입액 | 최저액 | 교부일 | 교부금액 | 계산방법 | 교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표2와 같음.

(표2)

|  |  |  |  |  |
| --- | --- | --- | --- | --- |
|  | 자기자금 | 자금차입 | 기타 | 합계 |
| 금액 |  |  |  |  |
| 조달처 명칭 | - |  |  | - |
| 비고 |  |  |  | - |

(단위: 엔)

3 첨부 자료

(1)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를 실시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표3과 같음

(표3)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2)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표4와 같음

(표4)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이상

(기재요령)

1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표1에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 때, 아래 (1)에서 (10)까지 유의한다.

(1)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마다 기재한다.

(2) “이름・명칭“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

(3) “거래일”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를 제공받은 날(신청 후 인정 전 보고자에 관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령(2009년 정령 제218호.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구매 또는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재한다. 해당 거래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기간 내로서, 해당 거래일이 확실한 시기를 기재한다.

(4) “신청”에는 “이름・명칭“에 기재된 자로부터 금액교부 신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있음”으로 기재한다.

(5) “구매액”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신청 후 인정 전 보고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을 기재한다.

(6) “최저액”에는 해당 구매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기재한다.

(7) “교부일”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금액을 교부한 날을 기재한다.

(8) “교부금액”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교부한 금액을 기재한다.

(9) “계산방법”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교부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기재한다.

(10) “교부방법”에는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금액의 교부방법을 기재한다.

2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표2에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을 기재한다.

그 때, 표2의 “자기 자금”에는 스스로 보유한 자금으로부터 출연한 금액을, “자금 차입”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한 금액을, “기타”에는 출자 등 “자기 자금” 및 “자금 차입” 외의 조달 방법에 의한 조달한 금액을, 조달처의 명칭 및 금액 내역과 함께 기재한다.

3 첨부 자료

①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②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를 본 보고서에 첨부한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번역문 또는 관련부분의 초역을 첨부한다.

(1) ①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①의 자료를 첨부할 때는 표3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그 때, 아래 “가”에서 “다”까지 유의한다.

가. “번호“에는 표1에 기재된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 대응하는 번호를 기재한다.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대해 여러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자료마다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 행에 기재한다. 단,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가지 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한 줄에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 및 자료 B를 조합함으로써 “거래일“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료 A와 자료 B를 한 줄에 기재한다.

나. “첨부자료의 표지”에는 표1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해당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대해 여러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한 가지 번호마다 한 첨부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단,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지 번호에 대응하는 행에 해당 여러 자료를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와 자료 B를 조합함으로써 “거래일”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해당 자료 A 및 자료 B를 한 줄에 기재한다)

다. “증명사실“에는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할 것인지가 명확하도록 그 항목을 기재한다.

(2) ②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②의 자료를 첨부할 때는 표4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기타 일반 주의사항)

1 대리인에 의해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대리인에 의한 보고라는 내용 및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아울러 위임장을 첨부한다.

2 기재 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히 별지에 기재한다.

3 본 보고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4 본 보고서는 신청 후 인정 전 환불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한다.

5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양식 제4(제14조 관련)**

양식 제4(제14조 관련)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변경인정신청서

년 월 일

소비자청장관 귀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부서명

주소 또는 소재지(우편번호)

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년 월 일자로 인정을 받은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므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인정을 신청합니다.

아래

1 변경사항

2 변경사항의 내용

|  |  |
| ---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

3 변경이유

4 첨부자료

이상

(기재요령)

1 변경사항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 중 변경을 할 사항을 기재한다.

2 변경사항의 내용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대비하여 기재한다. 그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을 친다.

3 변경이유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첨부자료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통지에 관한 자료의 사본, 그 외 변경의 인정을 위해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한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의 번역문 또는 관련부분의 초역을 첨부한다.

(기타 일반 주의사항)

1 대리인에 의해 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대리인에 의한 보고라는 내용 및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함께 위임장을 첨부한다.

2 기재사항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히 별지에 기재한다.

3 본 신청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4 본 신청서는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기재된 실시기간의 종료일까지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한다.

5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양식 제5(제15조 관련)**

양식 제5(제15조 관련)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의 실시결과 보고서

 년 월 일

소비자청장관 귀하

연월일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의 직위 및 성명

연락처 부서명

주소 또는 소재지(우편번호)

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_\_년\_\_월\_\_일에 인정된 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실시했으므로 보고합니다.

아래

1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표1과 같음

(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성명/명칭 | 거래일 | 신고 | 구입액 | 최저액 | 교부일 | 교부금액 | 계산방법 | 교부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실시상황

(1) 개별통지

표2와 같음.(표 2)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성명/명칭 등 | 거래일 | 통지일 | 주지사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2) 개별통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주지

3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방법

표3과 같음

(표3)

|  |  |  |  |  |
| --- | --- | --- | --- | --- |
|  | 자지자금 | 자금차입 | 기타 | 합계 |
| 금액 |  |  |  |  |
| 조달처 명칭 | - |  |  | - |
| 비고 |  |  |  | - |

(단위: 엔)

4 첨부자료

(1)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가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표4와 같음.

(표4)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2)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실시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가. 개별통지

표5-1과 같음

(표5-1)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나. 개별통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주지

표5-2와 같음

(표5-2)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표6과 같음

(표6)

|  |  |  |  |
| --- | --- | --- | --- |
| 번호 | 첨부자료 표지 | 증명사실 | 비고 |
|  |  |  |  |
|  |  |  |  |
|  |  |  |  |

이상

(기재요령)

1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

표1에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마다 기재한다.

(2) “이름・명칭“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

(3) “거래일”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인도 또는 역무제공을 받은 날(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정 후 보고자”라고 한다)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령(2009년 정령 제218호.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구매 또는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재한다. 해당 거래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기간 내로서, 해당 거래를 했음이 확실한 시기를 기재한다.

(4) “신청”에는 “이름・명칭“으로 기재한 자들의 금액교부 신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있음”이라고 기재한다.

(5) “구매액”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거래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의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인정 후 보고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한 구매액)를 기재한다.

(6) “최저액”에는 해당 구매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얻은 금액(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기재한다.

(7) “교부일”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금액을 교부한 날을 기재한다.

(8) “교부금액”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교부한 금액을 기재한다.

(9) “계산방법”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게 교부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기재한다.

(10) “교부방법”에는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금액의 교부방법을 기재한다.

2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실시상황

(1) 개별 통지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기재한 주지의 방법으로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개별 통지를 한 경우, 표2에 해당 주지의 실시상황을 기재한다.

그 때, 이하 “가”에서 “라”까지 유의한다.

가. “이름・명칭 등”에는 개별 통지를 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그 외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를 식별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거래일”에는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제공을 받은 날(인정 후 보고자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출액 산정 방법에 대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과징금 대상행위에 관한 상품의 구매 또는 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재한다. 해당 거래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기간 내로서, 해당 거래를 했음이 확실한 시기를 기재한다.

다. “통지일”에는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통지한 날을 기재한다.

라. “주지사항”에는 개별 통지에 의해 주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개별통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주지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기재한 주지의 방법으로서,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 게재 또는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 그 외 개별 통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주지를 한 경우에는 2(2)에, 그 주지의 방법, 주지시기, 주지기간 및 주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 방법

표3에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을 기재한다.

그 때, 표3의 “자기 자금”에는 스스로 보유한 자금으로부터 출연한 금액을, “자금 차입”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에 의해 조달한 금액을, “그 외”에는 출자 등 “자기 자금” 및 “자금 차입” 이외의 조달 방법에 의한 조달금액을, 조달처의 명칭 및 금액 내역과 함께 기재한다.

4 첨부자료

①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실시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문 또는 관련부분의 초역을 첨부한다.

(1) ①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가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①의 자료를 첨부할 때는 표4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가. “번호“에는 표1에 기재된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자에 대응하는 번호를 기재한다.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된 특정인에 대해 여러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자료마다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 행에 기재한다. 단,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자료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 줄에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 및 자료 B를 조합함으로써 “거래일”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료 A 및 자료 B를 한 줄에 기재한다.

나. “첨부자료의 표지”에는 표1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해당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에 대해 여러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한 가지번호마다 하나의 첨부자료의 표지를 기재한다. 단, 특정 자료를 조합함으로써, 비로서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지번호에 대응하는 행에 해당 여러 자료를 기재한다(예를 들면, 자료 A와 자료 B를 조합함으로써 “거래일“이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A 및 자료 B를 한 줄에 기재한다).

다. “증명사실“에는 표1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항목을 기재한다.

(2) ②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에 관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주지에 관한 실시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②의 자료로서,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개별 통지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때는 표2에 기재된 해당 실시예정 환불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응하는 번호순으로 해당 자료를 정리한 후 첨부한다. 또한, 표5-1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개별 통지 이외의 방법에 의한 주지를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때는 표5-2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3) ③ 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 후에 실시된 환불조치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③의 자료를 첨부할 때는 표6에,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기타 일반 주의사항)

1 대리인에 의해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대리인에 의한 보고라는 내용 및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이 경우에는 아울러 위임장을 첨부한다.

2 기재 사항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히 별지에 기재한다.

3 본 보고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4 본 보고서는 인정실시예정 환불조치계획(법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정이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에 기재된 실시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해당 실시기간 경과 후 1주일의 마지막 날이 행정기관의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일 다음날까지)에 소비자청 장관에게 제출한다.

5 용지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

**양식 제6(제21조 관련)**

양식 제6(제21조 관련)

(제1면)

제 호

년 월 일 발행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의 신분증명서

|  |  |  |  |
| --- | --- | --- | --- |
| 사진 | 스탬프 | 소속관직성명 |  |
|  |  |  | 년 월 일 출생 |

발행자명 (인)

(제2면)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발췌

제29조 내각총리대신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사업자 혹은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사업자 혹은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해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그 외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장소에 입회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 부동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입회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등)

제33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의한 권한(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2 소비자청 장관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소비자청 장관은 긴급하게 중점적으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권한(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 보고 혹은 허위 물건을 제출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시행령 발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제15조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된 권한 중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소비자청 장관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업소관 장관 등에게 권한 위임)

제17조 소비자청 장관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하려는 사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해,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금융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단, 소비자청장관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용지 크기는 가로 70mm, 세로 110mm로 한다.

2 발행자는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소관하는 사업 중 국가공안위원회의 소장에 속하는 것에 대해, 국가공안위원회가 경찰청 직원에게 입회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청 장관,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재무국장, 후쿠오카 재무지국장, 소비자청장관, 총무대신, 법무대신, 재무대신, 세관장, 국세국장, 오키나와국세사무소장, 세무서장,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지방후생국장, 시코쿠후생지국장, 도도부현노동국장, 농림수산대신, 지방농정국장, 홋카이도농정사무소장, 경제산업대신, 경제산업국장, 국토교통대신, 지방정비국장, 홋카이도개발국장, 지방운수국장, 운수감리부장, 운수지국장, 지방항공국장, 환경대신 또는 지방환경사무소장으로 한다.

**양식 제7(제22조 관련)**

양식 제7(제22조 관련)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 또는 규약인정신청서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소비자청장관 귀하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상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별첨의 협정 또는 규약 인정을 신청합니다.

아래

체결

1 해당 협정 또는 규약을 ----- (설정)하는 이유

 변경

2 해당 협정 또는 규약이 법 제31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설명

이상

주

1 변경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주소(전화번호)에 변경이 없을 때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변경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변경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상기2에 규정하는 해당 협정 또는 규약이 법 제31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라는 설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정의 정리

(2)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올림 또는 내림, 그 외 형식적인 변경

3 용지의 크기는 일본산업규격 A4로 한다.